

작성방법

※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.

-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소재지, 소유자 등 농지 관련 사항
-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자경(自耕)·임차(賃借)·휴경(休耕) 및 폐경(廢耕) 현황 면적
-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종류 및 면적
-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

※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변경등록신청서 ①~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,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.

2.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, 농지등 면적,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.

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.

②-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, 밭, 과수원, 초지,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.

- 자경·임차: 공부상 면적 기준,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.

* 증빙서류: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단, 임차는 임대차·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)

- 실제경작면적: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(농작물 식재 등)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.(공부상면적 ≥ 실제경작면적+휴경면적+폐경면적)

- 휴경면적: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,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.(다만,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.)

- 폐경면적: 잡목 등의 점유,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.

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.

- 시설종류: ①온실(유리), ②온실(경질판), ③온실(비닐), ④육묘장(유리), ⑤육묘장(경질판), ⑥육묘장(비닐),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. / 시설면적(㎡)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.

3. 등록신청인(법인의)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(前)과 변경 후(後) 내용을 등록합니다.

⑤-1란은 변경 전의 기본직접지불금의 '논·밭 구분'과 '신청면적'을 작성합니다. 이때 신청면적은 ③ '농지등 면적'의 실제경작(B)과 휴경(C)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'논밭구분'란은 아래의 ㉔에 해당하는 경우 "논"으로, ㉕에 해당하는 경우 "밭"으로, ㉖에 해당하는 경우 "밭"으로 표시됩니다.

㉗ "논"으로 표시 - 쌀 고 정: 1998. 1. 1. ~ 2000. 12. 31. 해당 농지를 논농업(논벼, 미나리, 연근, 왕골)에 이용하였을 경우

㉘ "밭"으로 표시 - 밭 고 정: 2012. 1. 1. ~ 2014. 12. 31.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

㉙ "밭"으로 표시 - 조건불리: 2003. 1. 1. ~ 2005. 12. 31.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

⑤-1란은 변경 후의 기본직접지불금(소농, 면적)의 '논·밭 구분'과 '신청면적'을 작성합니다.

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(매매(중여, 상속 포함), 임대(자경농지 삭제), 임차종료(임차농지 삭제), 폐경, 기타(상세사유 기재))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[별지 제12호 서식]

(6쪽 중 제6쪽)

첨부서류

※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, 읍장·면장·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대장,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1. 발급받은 등록증

2.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

나.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. 다만,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됩니다.

다.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라.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

※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6쪽 중 제1쪽)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45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① 등록신청인 | 성명(법인명) |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- |
| | 전화번호 | 주소 | |

| (등록신청인1 성명) (연락처) | | (은 행 명) (계좌번호) | | (등록신청인2 성명) (연락처) | | (은 행 명) (계좌번호) | | ⑥ 변경 사유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② 농지일반 | | ③ 농지등 면적(㎡) A ≥ B+C+D | | | | ④ 시설현황 | | | ⑤ 기본(선택)직접지불금 신청 | | | | | | | | | | |
| 번호 | 농지등 소재지 | 농지등 소유자 | ②-1 지목 | | 공부(A) A ≥ 자경+임차 | | ③-2 미이용 | | ⑤-1 기본직접지불금 (소농직접지불금 · 면적직접지불금) | | ⑤-2 선택직접지불금 (전략작물) | | | | | | | | |
| | | | 공부 | 실제 | 자경 | 임차 | ③-1 실제 경작 (B) | 휴경 (C) | 폐경 (D) | 시설 종류 | 시설 면적 (㎡) | 논·밭 구분 | 신청 면적 (㎡) | 재배 품목 | 신청 면적 (㎡)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*** 기타 변경신고 사항:**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(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, 시행규칙 제38조제2항)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 등록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| |
|----|----------|
| 확인 | 읍장·면장·동장 |
| | |

| | | |
|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(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) | 수수료 없음 |
| ※ 성명(법인명),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, 등록면적,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, 수령금액 등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. | | |

297mm×210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13호 서식]

(6쪽 중 제2쪽)

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※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, []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.

1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. [] 확인
2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. [] 확인
3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. [] 확인
4.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,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5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 직접지불금)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. [] 확인
5.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·작성하였으며,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. [] 확인

년 월 일

등록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
|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| 확인 | 읍장·면장·동장 |
| | | |

[별지 제13호 서식]

(6쪽 중 제3쪽)
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전산시스템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가족관계증명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| 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|
|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(임야)대장(국토정보시스템), 건축물대장 | |
| 토지등기부 등본, 건물등기부 등본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, 개별주택가격확인서, 공통주택가격확인서,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| |
|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| 교육인력포털시스템(agriedu),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|
|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| |
|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| 후계농/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|
|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| |
| 농업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| 농림사업정보시스템,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|
| 축산업 등록제·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| |
|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| |
| 친환경농산물,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| |
|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|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|
| 도양 환경조사 정보 | 세입규(SAFE Q) 정보시스템, 식품행정통합시스템 |
|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| 도양환경정보시스템(흙도람) |
| 공익직접지불금,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,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,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|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등록신청인[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(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, 그 외 가족 구성원),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(대표자,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]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]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※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대장, 토지등기부 등본,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,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, 종전의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발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| | | 년 | 월 | 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|
| 등록신청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) | 경영주(대표자)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경영주외의 농업인(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
[별지 제13호 서식]

(6쪽 중 제4쪽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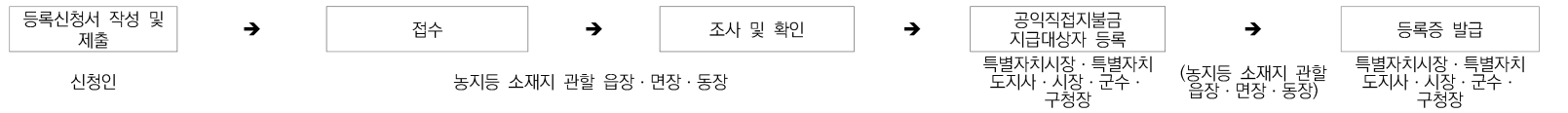
-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[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(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, 그 외 가족 구성원),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(대표자,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를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]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합니다)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)와 중앙회의 자회사(이하 "농업협동조합"이라 합니다)의 맞춤형 농정지원, 농정안내 서비스, 지방 농정 지원, 농업·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,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, 융자·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-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,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·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,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-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·농촌 관련 융자·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, 보조금 등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-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"등록정보"라 합니다)의 확인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·등록·점검·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,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, 종합소득, 면세유류 배정정보, 농기계·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·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거부

※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융자·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| | | 년 | 월 | 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|
| 등록신청인 (개인정보 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자) | 경영주(대표자)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경영주외의 농업인(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그 외 가족 구성원 | | | (서명 또는 인) |

처리절차



작성방법

※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변경등록신고 사항이란? [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16조제2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합니다) 제46조제2항, 시행규칙 제38조제2항]

-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(讓受)·임차 또는 사용자(使用借)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자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

※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변경등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등록신청인(대표자)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등록합니다.

-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을 변경등록신고하는 농업인(대표자)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(대표자)을 말합니다.
 - 등록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,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.
 - '등록신청인명(주민(법인)등록번호)'란에서 '소농직접지불금'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(등록신청인)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. '면적직접지불금'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(등록신청인)로서 자격이 있으며, 해당 지급대상자 중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별로 등록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, 면적직접지불금 또한 등록신청인(대표자)에게 지급됩니다.

2. 신청서 ②~⑥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,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.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, 농지등 면적,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.

-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.
 - * 사유구분: 매매(중여, 상속 포함), 임대(자경농지 삭제), 임차종료(임차농지 삭제), 폐경, 기타(상세사유 기재)
- ②-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, 밭, 과수원, 초지,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-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.
 - 자경·임차: 공부상 면적 기준,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.
 - * 증빙서류: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단, 임차는 임대차·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)
 - 실제경작면적: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(농작물 식재 등)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.(공부상면적 ≥ 실제경작면적+휴경면적+폐경면적)
 - 휴경면적: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,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.(다만,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.)
 - 폐경면적: 잡목 등의 점유,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.
-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.
 - 시설종류: ①온실(유리), ②온실(경질판), ③온실(비닐), ④육묘장(유리), ⑤육묘장(경질판), ⑥육묘장(비닐),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. / 시설면적(m²)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.
- ⑤-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.(논·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)
 - '논밭구분'란은 아래의 ㉔에 해당하는 경우 "논"으로, ㉕에 해당하는 경우 "밭"으로, ㉖에 해당하는 경우 "밭"으로 표시됩니다.
 - ㉔ "논"으로 표시 - 쌀 고 정: 1998. 1. 1. ~ 2000. 12. 31. 해당 농지를 논농업(벼, 미나리, 연근, 왕골)에 이용하였을 경우
 - ㉕ "밭"으로 표시 - 밭 고 정: 2012. 1. 1. ~ 2014. 12. 31.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
 - ㉖ "밭"으로 표시 - 조건불리: 2003. 1. 1. ~ 2005. 12. 31.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
 - '신청면적'란은 ③ '농지등 면적'의 실제경작(B)과 휴경(C)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⑤-2란은 변경신고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.
 - '재배품목'란은 전략작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.
 - '신청면적'란은 전략작물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.
-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[매매(중여, 상속 포함), 임대(자경농지 삭제), 임차종료(임차농지 삭제), 폐경, 기타(상세사유 기재)]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

[별지 제13호 서식]

(6쪽 중 제6쪽)

첨부서류

- I.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: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, 읍장·면장·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대장,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1.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 2.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 3.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
- II. 선택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: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, 읍장·면장·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대장,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1.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2.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2호·제3호·제5호의 서류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**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**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인적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|
| 성명 (법인명) |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
| 주소 | | | |

2.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 및 농지등

| 구분 | 실제 경작작목 | 조정의무 대상작목 | 농지등 소재지 | | | | 실제 재배면적 (㎡) | 조정의무 부과대상 면적(㎡) | 재배면적 조정방법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시 · 군 · 구 | 읍 · 면 | 리 · 동 | 지번 | | | |
| 논 | | | | | | | | | |
| 밭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(㎡) | | | | | | | | | |

※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안자 | 직위(직급) 서명 | 검토자 | 직위(직급)서명 | 결재권자 | 직위 (직급)서명 |
| 협조자 | | | | | |
| 시행 |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| 접수 | |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 | |
| 우 | 주소 | | | / 홈페이지 주소 | |
| 전화() | 전송() | | |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| / 공개구분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기본직접지불금(전략작물직접지불금) 등록 거절자(제외자) 대장

| 번호 | 신청구분 ([] 해당란에 "√" 표시) | 성명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주 소 | 신청면적 (㎡) | 제외사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1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2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3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4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5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6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7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8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9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0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1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2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3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4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5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6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7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8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19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| 20 | 기본[],선택[] | | | | | |

- ※ 1) “기본”은 “소농”과 “면적”으로 구분
- 2) 제외자: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 농지등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

20 년 월 일

○ ○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장) (직인)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| | |
|-------|---|
| 신청 구분 | [] 소농직접지불금 [] 면적직접지불금 ※ [] 해당란에 "√"표시 |
| 거부 사유 | |

등록거부 내용

| 등록 신청인 | 성명 (법인명) | |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| 주소 | | | | | | | | |
| 신청 내용 | 농지등 소재지 | | | 소농직접지불금 | | 면적직접지불금 | | | |
| | 읍·면 | 리·동 | 지번 (임시지번) | 합계 | 신청면적(㎡) | | 합계 | 신청면적(㎡) | |
| | | | | | 작물재배 | 휴경 | | 작물재배 | 휴경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*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|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|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 |
| 협조자 | | |
| 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|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 | |
| 우 주소 | / 홈페이지 주소 | |
| 전화() | 전송() |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

| | |
|----|---|
| 구분 | [] 소농직접지불금 [] 면적직접지불금 ※ [] 해당란에 "√"표시 |
|----|---|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신청인 | 성명 (법인명)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
| | |
|------------|--|
| 이의신청 내용 | |
|------------|--|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.

이의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| |
|----|----------|
| 확인 | 읍장·면장·동장 |
| | |

| | |
|------|---|
| 첨부서류 | 1. 등록증 사본 2. 등록거부 통보서 3.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|
|------|---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읍·면동 벼작물에 대한 지급면적

(단위 : 농가, m²)

| 사업년도 | 시도 | 시군구 | 읍면동 | 농가수 | 벼작물 지급면적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****년 | ***시도 | **시군구 | **읍면동 | **** | *, **, ***m ²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- 벼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 및 상토공급지원사업등 기타 관련업무시 해당 벼작물 지급면적에 대한 통계수치가 필요함
- '19년도 쌀직불금 당시 해당데이터 추출가능 '20년 이후부터 추출불가하여 관련 업무시 많은 문제점 발생

<기타 건의사항>

- 직불 등록확인증에 사업 연도 표시
- 필지별 지급금액 명시
- 등록거부통보서 일괄 출력
- 논·밭, 작물별 면적 및 지급 현황

시군구, 읍면동 통계보고서 양식